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9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3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3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3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4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4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4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4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4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4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47.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 촉구 결의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4)
48.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2)
49.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추가)

상정된 안건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6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6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6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6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6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6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6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6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6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6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6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6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6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6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6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6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6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6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6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6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7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7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7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7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7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7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7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7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7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7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7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7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7
3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7
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7
3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7
3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7
4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7
4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7
4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7
4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7
4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7
4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8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4
47.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4)	24
48.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2)	24

○ 의사일정 변경의 건	25
49.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	25
4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25

(16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장관으로 임명되시고 오늘 처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한 전재수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만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장관님, 발언대 가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 나가서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은 처음 해 봐서 그런 거지.

○**조승환 위원** 아직 위원인 줄 아시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다시 할 것 같으면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저는 직무대리입니다. 그것도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 자리한 전재수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만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가

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직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도 항상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해수부장관님 임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김용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3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3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3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4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4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4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4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4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4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16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문금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문금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문금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4일과 금일 오전 양일간 3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문대림 의원, 여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 전종덕 의원, 박수현 의원, 박희승 의원, 박덕흠 의원, 신장식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곡의 수급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미곡에 대하여 일정 기준 이상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 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따라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이원택 의원, 임미애 의원, 윤준병 의원, 문대림 의원, 송옥주 의원, 여기구 의원, 이병진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신장식 의원, 이만희 의원, 김선교 의원, 박덕흠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생산자에게 양곡 채소 어류 등 대상 품목의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조승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9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특례를 통합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수 의원, 서삼석 의원, 서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여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및 지도·단속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하고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89년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을 이 법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실제 환경청장이 면허 연장을 제한한 공문으로 인용 공문을 바로잡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보험금 전용 계좌 및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압류 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예선 업무와 도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도선업의 실제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도선업의 정의를 도선법 제2조 1호에 따른 도선업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신지식인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수산신지식인 개념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종덕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부터.

○전종덕 위원 반대토론을, 반대 입장을 밝히려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법안 상정을 그러면 양곡법하고 농안법을 따로 상정하실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각각 개별 법안은 개별 법안 심사 때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의결할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특정 법안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2개 같이 함께 모아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양곡법 관련해서 양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안정제 관련한 내용을 저는 양곡의 특수성과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 법안에도 명시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격안정제가 양곡법에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리 체계상 맞지 않으니 농안법으로 이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법은 농안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농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격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후퇴한 내용이고, 그동안의 거부권 법안보다 훨씬 더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의 약속, 광장의 약속을 위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거부권 법안의 경우는 기준가격을 정의할 때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 및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년가격이라는 내용이 이번에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농민들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나를 묻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차관께 물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작물 쏠림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평년가격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 산정할 때 농민들한테 더 유리한 내용을 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년가격이 빠진 기준가격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년가격을 다시 복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가격입니다. 공정가격은 지난 광장에서 농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공정가격은 농민들의 자존심과도 같습니다.

공정가격은 빠지고 기준가격은 축소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당연히 반대하고 이 법은 다시 철회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서 16조의2 3항 같은 경우도 심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심의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더 숙의하고 더 토론해서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더 확인해서 논의하자고 제안도 드렸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저는 전체 의결을 미루고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더 토론한 후에 의결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심의하지 못했던 16조의2 3항 같은 경우는 자조금법 21조의2(생산·유

통 자율조절)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내용을, 자조금법에 의해서 조정할 내용을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격안정제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시한 것은 또 다른 강제입니다.

제가 여러 논의 과정에서 의무 강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마다 답을 한 것은 강제 아니다,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인센티브를 줄 거면 이런 조항을 왜 넣어 가지고 오해와 불신을 만드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 또한 삭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안정제에 있어서도 양곡법에 명시될 내용이 농안법으로 이관되면서 공정가격과 기준가격이 하락했고 평년가격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후퇴입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도 충실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논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건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좀 시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종덕 위원 지난 논의 과정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년가격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의 거부권 법안과 이번에 평년가격이 빠진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더 숙고하고 더 논의해서 확실하게 농안법과 양곡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광장에서 했던 약속에 맞게 후퇴 없이 온전하게 두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농안법 논의를 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도 있지만 양곡법하고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준가격의 범위 또 평균가격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항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16조의2 제3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충분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시간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소위 법안 처리를 하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한다는 등으로 표결 처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표결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민주적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로 우리가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의 의견을 표명을 해 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22대, 21대 후반

을 거쳐 오면서 마치 다수결에 의해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설사 그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의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절차, 합의의 정신, 협의의 정신을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농림법안소위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차등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개정 방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처리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표결 처리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례를 과거에도 만들 때 제가 우려를 늘 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 국회에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누군가 합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농민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았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오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한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축조심의까지 진행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심도 있는 심사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조문별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또 차관의 정부 입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용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가 수용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결과인데 전체를 가지고 심의가 부족했던 것처럼 또 날림 심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통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의 우려나 걱정을 좀 뒷받침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법안소위도 하고 또 전체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고자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유돼서 우리가 법안을 개정하고 또 이런 개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도움을 좀 주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불필요하게 제대로 진행된 소위가 쟁점과 어긋나게 일종의,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이걸 펌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은 나중에, 한 번 발언하셨으니까.

○임미애 위원 저도 오전에 심의하는 과정에, 전종덕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아예 사실은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논의가 되지 않은 게 마치, 그러니까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뺀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가격을 설정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년가격이라는 말이 왜 빠졌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오전에 질의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토론하실 때는 평년가격이라는 말 자체를 전혀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런데 오전 심의 때 어쨌거나 전종덕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가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공정가격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법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공정이라는 단어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률에 이것을 직접 조문화하는 것은 적용 기준이나 산정 방식 등이 굉장히 모호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공정가격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작년에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용어 하나 때문에 법 전체의 정신이 흔들리고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어를 저희 입장에서는 양보를 했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의록에까지 남겨 가면서 공정가격이라는 단어는 이 법조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공정가격이라는 내용 때문에 이 법이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 모든 내용은 저희가 기준가격이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담아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기준가격이라는 말이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만이 이 법안이 과거 법안과 비교해서 후퇴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법안 전체를 들여다 봤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 지금 후퇴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전에 이 농안법 심의하면서 정부 측에서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영비를 사실은 제안을 하셨던 사안 아닙니까, 저희 여기 소위에서도?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후퇴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존 안처럼,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저는 양곡법, 농안법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퇴 없이 개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줄기차게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하지 말고 거부권 내용을 그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권 그대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부권 내용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자는 거였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년가격이 빠졌고 이것이 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통과시키자라고 강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정가격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리 체계에 왜 맞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거부권 법안 논의할 때 공정가격이란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가격은 농민들의 생산비용에 거기에……

저는 애초에 초안을 땀의 가치를 보장하자, 그래서 농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비용을 산정하자라고 했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수급 조절이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든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수급 조절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정가격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 법안에서 후퇴를 해서 그러면 생산비용이 반영되고 거기에 수급 조절까지 해서 최소한의 공정한 공정가격으로 농민들에게 가격을 보장해 주자는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작

년에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겁니다. 통과되는 과정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거부권 법안을 논의하면서 그때보다 더 후퇴해야 될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 국회 앞에서 우리 농민들 농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법안, 농민들에게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평년가격을 기준해서 생산비와 수급 조절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은 기준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어서 생산비와 수급 조절의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고 이것을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생산비나 수급 조절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고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평년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가격이 실제적으로 기준가격을 미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강명구 위원님.

○**강명구 위원** 어제 법사위 상법 개정, 환노위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 처리했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회 농해 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치자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고요. 그래도 여당에서는 다 무시하고 뭐가 그리 급한지 기준가격 정의 등 주요 쟁점 사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밀어붙였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저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또 안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강행 처리 시도하지 마시고 협치에 입각해서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것 강행하지 마시고 숙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제가 정조 회의에 참석이 좀 부실했더니……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원래 수산물은 안 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이번에 수산물이 포함됐네요. 어떻게 그렇게 해수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별도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별도 법

안 개정안을 냈는데, 이건 사실상 해수법안소위하고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임호선 위원** 시행을 3년 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덜렁 받아들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이 부분은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연구된 사례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3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 3년 안에 저희들이 잘 좀 챙기고 보완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게 절실했었는데, 역시 정권이 바뀌니 좋긴 좋네요. 국민주권정부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강행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것 우리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후퇴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예, 다들 농민을 생각하고 농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까 평년가격과 관련해서 임호선 위원님이나 임미애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하는 거겠지요?

○**임호선 위원** 5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5년 평균가격을 말하는 건데 시장의 평균가격에는 생산비하고 유통비가 포함되지요? 장관님,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생산비하고 유통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포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다음에 마진이 있을 수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통비는 유통업자들이 사실 중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마진들이 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래서 시장의 평균가격에 유통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의 평년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든다면 유통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서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님이 설명을 좀, 아까 소위에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차관님이 설명을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여러 가지 설명 드렸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평균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쓰면 농업인이 받는 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취가격에다가 유통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모두 보장한다는 거는 사실 농업인 관점에서 보면 좀 과다가 되는 거고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유통비용이 라든지 빼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생산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생산비와 수급 조절 내용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과된 안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지금 기준가격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고려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니까 생산비는 직접·간접생산비가 다 포함된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노임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어떤 것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자기노동력비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니까 자기노동력 다 포함된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자본비용이랑.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다만 시장의 평균가격이라는 개념은 보통 생산비와 유통비, 수취가격, 마진이 이렇게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 유통비는 유통업자들이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조정안하고 정부 측 안은 자가노동비하고 경영비 수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생산비하고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까 설명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간 시장의 평균가격에서, 그 시장의 평균가격에는 유통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뺀 직접생산비로 최대치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제대로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 거부권 법안은 왜 평년가격을 넣어 놓으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지적이 있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거지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를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평년가격에 대한 기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종덕 위원님, 당해 연도 시장가격은 폭망했을 때,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유통비라든가 생산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당해 연도 시장가격이 하락됐다는 거지요. 그것은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가격으로부터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종덕 위원 아니, 시장가격이 무너졌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당해 연도의 시장가격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니아니, 거기 그 법안을 이해해 보시면 돼요.

○송옥주 위원 법안소위에서 다 논의하신 건데 또 전체회의에서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법안에 나와 있잖아요. 법안을 잘 숙지해 보세요.

○전종덕 위원 아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차액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잖아요.

○송옥주 위원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가격이 무너지는 경우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대해서, 농안법은 1차 거부권 행사당했을 때도 쟁점을 많이 토론했습니다. 토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다 토론을 했었던 쟁점들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쟁점 된 것은 딱 시장의 평균가격에서 유통비 포함 부분이 부분 말고는 쟁점은 다 이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유통비를 포함한 평년가격이 있어야 기준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준가격을 높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잠깐요, 강명구 위원님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강명구 위원 농안법에 대해 과거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한 바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강명구 위원 여기에 대해 장관님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이 왜 바뀌셨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난번에 재의요구 할 당시에 생산 쓸림 현상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계산을 하면 5대 채소만 농안법으로 한다고 해도 1조 2000억이 소요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5대 채소 말고 나머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치까지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기준가격에 의해서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님의 소신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농해수위만큼은 다른 상임위하고 저는 성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아무리 강행 처리하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더라도 우리 농해수위만큼은 철저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 협치에 입각한 논의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우리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때는 여야 협치에 꼭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저도 간사이자 오늘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법안은 21대 때도 논의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좀 양해말씀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지금 마지막으로……

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까 손을 드신 분이 임미애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두 분 말씀 드리고 법안에 대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신 것 같은데……

○**전종덕 위원** 애초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공정가격, 기준가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공정가격과 기준가격에 생산비를 반영해서 어쨌든 농민들의 가치를 좀 더 보장해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통비를 빼면 기준가격이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그 기준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후퇴지요. 애초보다 더 후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년가격이라는 그 기준과, 그게 가이드가 되는 거지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생산비, 수급 조절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준가격을 높여서 시장가격보다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만큼을 보전해 주자 이게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의 취지대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그 전보다 기준가격이 다운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농민 소득보장 위해서 유통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준가격 설정해서 그 유통비까지도 가격안정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어이없는 발언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통비를 포함해서 가격안정제에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유통구조 개선 얘기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을 위한다면 만장일치로 하자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강명구 위원** 만장일치가 아니고 협치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협치로요.

○**임미애 위원** 예, 협치요. 농민을 위한다는 것하고 협치 내지는 만장일치라는 말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농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법안 심사하셨고 여당에서도 농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법안 심사를 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누가 더 농민을 생각하고 누가 덜 농민을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법안을 심사할 때는, 법안을 제출하는 사람들은 최대치를 법안에 담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과 야당 측 의견과 여당 측 의견을 서로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들을 찾아 나가면서 수정안들이 마련되는 건데 자신의 법안 내용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법안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 법안의 정신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 상황을 좀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김선교 위원** 빨리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법안소위 심사할 때 가격안정제하고 수입안정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감안된 가격 이것은 수입안정보험이 기준이지 가격안정제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때 이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영비 등 이 내용이 오히려 생산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후퇴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대신에 평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유통비용과 관련된 그런 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니 만큼 그 부분은 이 정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토론이 안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통비가 빠진다는 얘기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미애 위원** 유통비는 당연히 빠져야 하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제 법안이 반영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잠깐요, 지금까지 농안법은 근 1년이 넘는 시간에 쟁점과 현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좀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종덕 위원**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저를 포함해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충분히 논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면 충분하게 쟁점이라든가 핵심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덕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투표하십시오! 왜 일방적으로 방망이 때리십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계속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왜 일방적으로 때리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니, 이건 법이 아니고……

○임미애 위원 축조심사 생략한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면 이의 있으시냐고 했을 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종덕 위원 이의 있느냐고 안 물어보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니, 물어봤잖아요, 방금 전에. 여기 써 있어요, 시나리오가.

○전종덕 위원 아니, 계속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니, 시나리오가 써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음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까 김선교 위원님who 좀 빨리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도를 내다 보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너무 진행을 빨리 하시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안 심의할 때도 그랬는데 너무 빨리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심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법안 심사 때 전종덕 위원님한테 기회 준 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기회 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종덕 위원 충분히 논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회의록 찾아보면 제일 많이 발언했고 제일 오래 많이 발언했

습니다. 그거 제가 한 번도 커팅 안 했습니다. 옆에서 커팅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커팅 안 했어요.

○전종덕 위원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수 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7항부터 33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4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농안법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수 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의사진행발언은 마지막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송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및 제48항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국회법에서 정한 20일의 상정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4)

48.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2)

(17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및 48항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7항 및 48항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해 여야 간사와 전종덕 위원 간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결의안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주문 중 하단 쪽에 '미국 정부의 일련의 요구들이'라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일련의 요구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공직적인 거여서 이 문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문구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미 합중국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죽 가고요 밑에 쪽 가서 '미국 정부의 일련의 요구들이' 있는데 같은 '미국 정부'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가 하단에 가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줄 '긴밀히 소통하는 등'으로 돼 있는데

‘등’을 ‘한편’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등’이 좀 애매하다는 거고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2번 항 중간쯤 보면 미국 정부의 ‘요구에’가 있는데 이것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로 변경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상정된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여야 간사와 전종덕 위원 간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4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9.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건의 결의안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의사일정 제49항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좀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산업법에서 아까 수정안대로 의결하자고 했는데 지금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거랍니다.

위원님들, 행정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시 한번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17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전종덕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두 분 말씀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까지.

전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저는 지난번 양곡법도 그랬고 오늘 농안법도 마치 시간에 쫓기듯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도 안 되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구 하나 토씨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구, 어떤 토씨에 따라서는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 놓고 마치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진행 방식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도 이것이 다 만족해서 너무 홀륭해서 지난 거부권 법안에 같이 동의해서 찬성한 것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한 이 법은 후퇴한 겁니다. 지난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를 했어요.

우리 법안을 만들었을 때 애초의 정신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제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농업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양곡법이든 농안법이든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곡법을 농안법으로 합쳐서 가격안정제를 양곡법에서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양곡법이 담는 특수성도 담아 내지 못하고 가격도 후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가격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유통비 문제도 하셨는데 당연히 유통비도 포함이 돼야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국 통상 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희생하는 것을 막자고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 수해로 짹쓸이당하고 화재로 짹쓸이당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또 망연자실하게 계속 이렇게 농민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정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막자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다들 좀 적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 농민들을 버리는데 국회까지 농민을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품어 줘야지요. 정말 벼랑 끝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후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준병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통상 압력이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국회 차원의 입법적인 개선 이 내용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행정부에 그 부분 신속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요. 또 양당 간사님 간에 협의를 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위원**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있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의 민주당 입장 그리고 또 여당이 된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미묘하지만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나름대로 기준가격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 또 해 주셔서 저는 찬성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도 농민과 농촌을 위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법안들 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두 분 장관님,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해서 조언을 했는데요. 양곡법, 농안법의 시행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행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디테일에서 정말 농업과 농민을 배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아까 양곡이 포함되는 부분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상생 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 대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차제에 저희들도 법안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농지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농지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안들을 좀 취합해서……

○**이만희 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실에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 법안으로 제출했으니까 행정실에서 그 내용들을……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아니, 법안으로 제출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이만희 위원** 추가로 있다면 얘기하시면 좋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도 하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려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를 확실히 함으로써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숙의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을 보완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고령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선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수산물 가격안정제 3년간 유예가 되어 있는데 치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원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출장 위원(1인)

여기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보고사항】

○의안 회부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4)

이상 4건 7월 8일 회부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9)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8.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이상 2건 7월 9일 회부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7월 11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2)

7월 14일 회부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이상 6건 7월 16일 회부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이상 2건 7월 17일 회부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9)

이상 4건 7월 18일 회부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4)

이상 3건 7월 21일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이상 2건 7월 22일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7월 23일 회부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이상 5건 7월 24일 회부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6)

7월 25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2025. 7. 25. 정희용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11724)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2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

(2025. 7. 28. 전종덕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211792)

이상 10건 7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7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2)

7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7. 16. 송혜수 외 50,08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4)

7월 17일 회부됨